

第137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2003年度 第3回 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1面
 2. 2004 會計年度 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檢討報告書 3面

1. 2003年度 第3回 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별	예 산 규 모			비 고
	예 산 액	기정예산	간주처리	
합 계	210,670,732	206,121,506	4,549,226	
일 반 회 계	180,648,761	177,350,535	3,298,226	
특 별 회 계	30,021,971	28,770,971	1,251,000	
의료급여	80,337	80,337	0	
주 차 장	29,941,634	28,690,634	1,251,000	

2. 위원회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 명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26	16,273,285	24	14,217,542	2	2,055,743
시민행정위원회	15	8,259,474	15	8,259,474		
재무건설위원회	11	8,013,811	9	5,958,068	2	2,055,743

3. 검토의견

○ 총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106억 7,073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5억 4,922만 6천원이 간주처리되어 2.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예산은 1,806억 4,876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9억 9,822만 6천원이 간주처리되어 1.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예산은 12억 5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4%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 명시이월의 타당성

- 먼저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에 따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명시이월비는 총 26건, 162억 7,328만 5천원으로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은 15건, 82억 5,947만 4천원이고,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은 11건, 80억 1,381만 1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본예산과 제1회 및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명시이월비의 한도액을 벗어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월사유를 보면 계절적 공사중지, 절대공기부족, 용지매입지연, 관계기관 협조지연 및 연구용역기간 장기소요 등이며, 사고이월과는 달리 다음연도로 재차이월이 가능하며,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